■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1. 3. 8.>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등의 제조업 [ ]폐업
[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 ]휴업 신고서
[ ]의약품등의 수입업 [ ]재개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내용	[ ]제조소 [ ]위탁제조판매업소 [ ]수입업	
	폐업·휴업·재개업 연월일	
	휴업예정기간	재개업 연월일(휴업인 경우)
	휴업사유	

「약사법」 제40조제1항·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품등의 수입업의 폐업·휴업·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수입업 신고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합니다)과 모든 품목의 허가증·신고증(폐업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합니다) 나. 보유중인 의약품등의 처리완료 결과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2. 재개업의 경우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수입업 신고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합니다) 나. 의약품등 제조소 등의 시설점검결과서 다. 의약품등 보유현황서, 보유중인 의약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필요시 실태조사)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